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1960. 10. 28. 제 정	1968. 9. 17. 일부개정
1971. 9. 21. 일부개정	1973. 4. 12. 일부개정
1980. 3. 28. 전부개정	1984. 5. 30. 전부개정
1985. 3. 11. 일부개정	1985. 10. 10. 일부개정
1988. 4. 20. 일부개정	1991. 9. 14. 전부개정
1995. 3. 27. 일부개정	1999. 3. 25. 일부개정
2003. 4. 10. 일부개정	2004. 10. 25. 전부개정
2006. 9. 15. 일부개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전부개정	

전 문

제 1 장 총 칙	1~12
------------------------	------

제 2 장 의결기구

제 1 절 통 칙	13~24
제 2 절 학생총회	25~34
제 3 절 학생총투표	35~46
제 4 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7~72
제 5 절 중앙운영위원회	73~91

제 3 장 집행기구

제 1 절 총학생회장단	92~100
제 2 절 중앙집행위원회	101~107
제 3 절 비상대책위원회	108~110

제 4 장 산하기구

제 1 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111~118
제 2 절 학부·과·반 학생회	119~125
제 3 절 동아리연합회	126~133

제 5 장 특별기구	134~145
-------------------------	---------

제 6 장 선 거	146~151
------------------------	---------

제 7 장 재 정

제 1 절 통 칙	152~153
제 2 절 자산·배분	154~157
제 3 절 회계·심의	158~162

제 8 장 회칙·세칙·규칙

제 1 절 회 칙	163~168
제 2 절 세칙·규칙	169~172
제 3 절 해석·규정집	173~174

부 칙

전 문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는 대학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대학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4·18의 거의 정신은 학원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전 고대인의 뜻을 모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탄생시켰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반백 년의 세월 동안 두 번의 강제 폐지와 슬한 탄압을 겪으면서도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야성으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어두운 시대에 겨레의 햇불이기를 자임했던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남아있음을 상기하면서, 또한 역사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학생회 운영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담아 1960년 10월 28일 제정되고 15차에 걸쳐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012년 10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① 이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이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위치한다.

제 4 조 【회원】 ① 입학·편입학·소속변경 등으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자는 이회의 회원이 된다.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③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④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 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 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밖에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⑥ 국내·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 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⑦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 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이 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편찬·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각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이 회의는 집회·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와 이 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⑦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⑧ 이 회의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⑨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⑩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자치단체】 ① 이 회의는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학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② 이 회의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 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 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의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구】 이 회의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산하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제 8 조 【학교 운영 참여】 ① 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 이 회의는 이 회의가 참여하도록 된 학교 기구 또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구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 【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이 회의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금지】 ① 이 회의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과 부회장
3. 각 학부·과·반 학생회장과 부회장
4. 각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과 분과장
5.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6.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무 처리】 ① 이 회의 각 기구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회의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 이 회칙에서 공고하도록 한 사항은 회원들이 해당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표 게시판과 10개 이상의 거점 게시판,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공고의 모양을 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록물 관리】 ①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④ 이 회의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⑤ 이 회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의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있을 때만 열람·활용할 수 있다.

⑥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이 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⑦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회의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⑧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의결기구

제 1 절 통 칙

제13조 【기본이념】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 【정의】 ① 이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이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③ 이 회칙에서 “특별의결요건”이라 함은 일반요건보다 가중된 의결요건을 말한다.

제15조 【의결기구의 위계】 ① 이 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기】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7조 【의장】 ①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장 직무의 제한】 ① 의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의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건의안
3.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③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 【사무·재정】 ①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53조제4항에 따라 각 의결기구의 의장이 소집요구 없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3.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④ 제2항에도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할 수 없다.

제21조 【안건의 발의】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안건 발의는 소집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③ 소집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22조 【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학생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3조 【방청·발언권】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학생총회

제25조 【지위】 학생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7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생총회가 소집되면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의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8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자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④ 제 1 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소집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8조제 4 항(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0조 【운영 방법의 결정】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 개의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논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공청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확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8조제 4 항(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제 1 항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개의·의결요건】 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4천 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안건】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제33조 【안건 위임】 ①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65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② 개의하지 못한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4조 【비상학생총회】 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정회원·준회원 2천 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비상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제 3 절 학생총투표

제35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36조 【투표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37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38조 【시행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9조 【성립·의결요건】 ①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 학과·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1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확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역투표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투표관리를 담당한다.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각 지역투표관리위원회에 배속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⑤ 그 밖에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면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투표 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결과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제39조제3항에도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학생 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45조 【정책투표】 ① 이 회의는 일상적인 의사 수렴과 여론 파악을 위해 정책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학생회장이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③ 시행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투표에 부칠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정책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이때 시행일은 시행요구서식에 기재된 시행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시행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⑤ 정책투표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투표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39조제2항(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자)과 제3항(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 계산의 기준), 제40조(투표관리위원회), 제41조(투표 기간), 제42조(투표 방법), 제43조(결과 공고), 제44조(무효처리)를 준용한다.

⑦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책투표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 그 밖에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7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48조 【대의원】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소속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 200명당 한 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3.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제2항제3호는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도 대의원으로 한다.

④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정회원 수가 400명을 넘는 학부·과·반 학생회는 등록절차를 거쳐 부회장 한 명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등록절차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반과 동아리연합회가 신설·폐지·개편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 의석의 신설·폐지 등을 의결한다.

⑥ 특별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해당 특별기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정하여 개의 직후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 직책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폐회하면 소멸한다.

⑦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때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49조 【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50조 【대의원의 청가·결석】 ① 대의원이 사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가서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결석계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청가서와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③ 청가서와 결석계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때 외에는, 결석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청가서·결석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 되면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52조 【정기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의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까지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임시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생총회의의 안건 위임

6. 제99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7. 제100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8. 제16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회】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개의·의결요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달리 정한 위원회
 2. 상임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5. 제71조의 회칙·세칙·규칙·학칙에 관한 사항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종류
2. 위원회의 소관사항
3. 위원회의 구성원과 개의·의결요건
4.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과 종료일

제55조 【소집 공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53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56조 【자료의 사전 배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집행위원회 등의 보고·인준 사항, 각 기구의 총학생회비 예산안·결산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비치하는 방법과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 【개의·의결요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2.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4.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58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6조제2항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4.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70조제2항의 총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의장 또는 대의원의 제의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 【안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5. 제33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6. 제99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7. 제100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8. 제163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0조 【안건 위임】 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회의의 산회가 결정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1. 제65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7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5. 제71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71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제71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개의하지 못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61조 【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2조에 따라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4조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 설치와 폐지를 의결한다.

제63조 【결정·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65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제100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66조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인준 받아야 한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이 있으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임시로 유효하다.

1.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
2.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의 임명

3. 산하 국서의 신설·폐지와 변경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67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제명 또는 합병을 의결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48조제 6 항에 따라 기구장에게 폐회 시까지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기구를 의결한다.

제68조 【감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제69조 【징계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산하기구, 특별기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제66조제 2 항,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제67조제 2 항과 제142조에 따른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 2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 3. 제명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 3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 2 호와 제 3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 2. 출석 정지
- 3. 대의원 자격 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 4. 대의원 제명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⑤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 2 항제 3 호와 제 4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70조 【재정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학생회비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출된 결산보고서·예산안 중 문제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기구에 이번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162조와 「재정 운용세칙」을 따른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회칙·세칙·규칙·학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세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고려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72조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73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74조 【중앙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장
3.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자치규칙에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를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은 제1항에 우선한다.

제75조 【중앙운영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은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제76조 【중앙운영위원의 결석】 ① 중앙운영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석계의 제출은 중앙운영위원회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③ 결석계에는 결석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할 때 외에는, 3회 이상 결석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결석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속 기구에 결석 사실을 공고하고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77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일 때,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는 제81조에도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회의를 개의하며, 중앙운영위원 중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78조 【정기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주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개의 전에 중앙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장소의 변경이 공지되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의 요일과 시각을 중앙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매월 말 익월의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중앙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9조 【임시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3.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제80조 【특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개의·의결요건】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83조 【안건】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60조제 1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세칙에서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때는 제 1 항에도 해당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84조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3조제 1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9조제 1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학생총회는 제30조제 2 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제28조제 3 항과 제53조제 3 항에 따라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이 신설·폐지·개편되면 제48조제 5 항에 따라 소집 공고일 전까지 대의원 의석의 신설·폐지 등을 의결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요구가 있으면 제45조제 2 항과 제45조제 4 항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을 의결하고, 시행일을 결정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0조의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85조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03조제 2 항과 제104조제 3 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을 임명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66조제 1 항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보고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제100조제 2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86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6조에 따라 특별기구 인준 요청을 심의하여 인준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8조에 따라 특별기구를 재심의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42조에 따라 특별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 【선거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8조 【재정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59조에 따라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의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 심의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55조제 7 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제165조제 1 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세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을 따른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90조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직전 학기 총학생회비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2%를 초과하는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총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장은 협의·활동 직후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1조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를 대표하여 학교 기구의 학생 대표가 되는 자의 배석 하에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논의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 3 장 집행기구

제 1 절 총학생회장단

제92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

장이 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 【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제94조 【집행기구 관련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총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와 위원장·위원에 관하여서는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5조 【대외적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72조제 1 항 또는 제90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6조 【의무】 ① 총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제96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7조 【선서】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개표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와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기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고대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8조 【임기·연임금지】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후임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면 후임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예정일 48시간 후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본다.

② 총학생회장은 후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제99조 【사퇴】 ① 총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하면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0조 【탄핵】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2.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이 때,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탄핵안은 학생총회일 때 제31조, 학생총투표일 때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둘 중 한 명만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둘 중 한 명이 사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01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102조 【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1. 중앙집행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국원

제103조 【중앙집행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이 회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국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 【업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개의·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106조 【중앙집행회의】 ① 총학생회장단 혹은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회의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 【집행위원장회의 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회의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동종 업무 담당 국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계열회의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비상대책위원회

제108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30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제 1 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과 각 동아리연합회장은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109조 【권한·업무】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 중앙집행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 【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4 장 산하기구

제 1 절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

제111조 【지위】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의 단과대학 · 독립학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12조 【독립학부】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를 독립학부라 한다.

제113조 【회원】 ① 각 단과대학 · 독립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 휴학생은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②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에 속한 학부 ·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에 속한 학부 · 학과로 편입 · 소속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복수전공자는 전적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의 학부 · 학과를 2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의 학부 · 학과가 포함된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 전공을 전교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집단위로 입학해서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의 학부 · 학과를 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4조 【의결기관】 ①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총회는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단과대학 · 독립학부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5조 【학생회장단】 ①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단과대학 · 독립학부는 부학생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③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단과대학 · 독립학부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④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 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 【집행기관】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써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7조 【재정】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제16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 【자치규칙】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자치규칙은 이 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의결기관의 의결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으면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1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 절 학부 · 과 · 반 학생회

제119조 【지위】 학부·과·반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학부과정의 학부·과·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20조 【회원】 ① 각 학부·과·반에 소속된 재학생·휴학생은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②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학부·학과로 편입·소속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복수전공자는 전적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하나의 과로 구성된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산하기구로 과·반 학생회를 둘 때,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학부·학과로 편입·소속변경한 자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과·반 학생회를 정한다.

- ④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⑤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1조 【의결기관】 ① 학부·과·반 학생총회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학부·과·반 학생회는 학부·과·반 학생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으로 학부·과·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 【학생회장】 ① 학부·과·반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반을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가 속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운영위원이 된다.

- ② 학부·과·반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둘 수 있으며,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정회원 수가 400명이 넘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부학생회장은 제48조제 4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③ 학부·과·반 학생회장은 학부·과·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④ 학부·과·반 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 【집행기관】 ① 학부·과·반 학생회는 학부·과·반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써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부·과·반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반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 【재정】 학부·과·반 학생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5조 【자치규칙】 ① 학부·과·반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학부·과·반 학생회의 자치규칙은 이 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③ 학부·과·반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부·과·반 학생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당 학부·과·반 의결기관의 의결로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⑤ 학부·과·반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을 때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1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절 동아리연합회

제126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창조적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동아리들의 연합체이다.

제127조 【구성】 ① 이회는 소재지에 따라 복수의 동아리연합회를 둘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동아리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중앙동아리로 구성된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8조 【의결기관】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 【회장】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해당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부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0조 【집행기관】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써 해당 동아리연합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1조 【분과】 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②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③ 분과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32조 【재정】 ①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는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중앙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제160조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자치규칙】 ① 동아리연합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의 자치규칙은 이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③ 동아리연합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동아리연합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당 동아리연합회 의결기관의 의결로 <동아리연합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으면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 1 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5 장 특별기구

제134조 【지위】 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②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135조 【성립 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2. 이 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 단체 또는 대표 단체

제136조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13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정회원·준회원 400명 이상의 추천이 있는 추천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제 1 항제 5 호의 자치규칙에는 성립 목적,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 1 항제 4 호, 제 7 호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제 1 항제 4 호의 서약의 방식과 원칙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37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는 제136조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8조 【재심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년도 결산보고서, 당해 연도 예산안
2. 전년도 활동보고서 (기구장의 선출과 회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의 재인준을 의결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재심의 서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특별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9조 【협의 의무】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의 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구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140조 【기구장】 ①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를 대표한다. 단, 평의회 체계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는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특별기구장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선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합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특별기구 자치규칙에 특별기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48조제 6 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특별기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특별기구의 기구장은 한시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제141조 【재정】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② 특별기구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특별기구는 제159조제 1 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기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제160조제 1 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 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경고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제159조제 1 항의 예산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때
2.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때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때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단,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6. 특별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기한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으면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제143조 【제명·합병】 ①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을 때 (이전의 경고는 경고를 받은 회기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3. 이 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44조 【특별기구연석회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들의 활동의 증진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연석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총학생회장은 발의권을 가진 특별기구연석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를 학기별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를 가진다.
- ③ 특별기구연석회의는 특별기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회의진행세칙」을 따른다.
- ④ 특별기구연석회의는 매학기 총학생회비 중 특별기구 배분분의 예산안·결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분배한다.
- ⑤ 특별기구연석회의는 특별기구들에 대한 예산과 공간 편성권을 가진다.

제145조 【자치규칙】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이 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③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제146조 【총학생회장단 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조가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④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147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8조 【선거권·피선거권】 ① 이 회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5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4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⑤ 선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0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30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1조 【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 절 통 칙

제152조 【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53조 【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자산·배분

제154조 【자산】 ① 이 회의는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 회의 자산이라 한다.

② 이 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④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

제155조 【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④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⑦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56조 【수입】 이 회 재정의 수입은 총학생회비, 학교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157조 【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매년 2학기 정기회의에서 총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하며, 필요할 때는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교지대는 총학생회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한다. 교지대와 교지 편집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회계 · 심의

제158조 【회계연도】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59조 【심의】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학기 정기회의: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예산안·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0조 【승인】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는 제1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결산을 보고하는 자는 정회원·준회원이어야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 1 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결산을 승인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61조 【사전 승인에 관한 특례】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에서 특정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이 승인되면, 이미 승인된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은 제159조와 제160조의 심의·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3조제 4 항(긴급한 사항)에 따라 소집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

③ 예산안 또는 결산을 사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이 제159조에 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에 관한 자료가 제56조(자료의 사전 배포)에 준하여 사전 배포되어야 한다.

제162조 【재심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서의 총학생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 1 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는 책임자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징계를 한다.

1. 책임자가 현직일 때: 총학생회비 지급액의 50% 삭감과 사과문·경위서 게재

2. 책임자가 전직일 때: 책임자의 사과문·경위서 게재

제 8 장 회칙 · 세칙 · 규칙

제 1 절 회칙 개정

제163조 【개정안 발의】 ①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연서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과·반, 학번
4. 대표 발의인

제164조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16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65조 【개정안 심의】 ① 제163조제 1 항제 1 호(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를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③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6조 【개정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58조제 3 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칙 개정은 제57조제 2 항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7조 【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는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68조 【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16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③ 본조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 2 절 세칙·규칙

제169조 【세칙·규칙】 ① 이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이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제170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제5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세칙 개정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167조를 준용한다.

제171조 【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된다.

제172조 【일반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1.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구에 관한 사항
4.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 회의 정기사업·비정기사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한 사항

9.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10. 이 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
 11. 이 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12.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13.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일반규칙은 제89조제 3 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제 3 절 해 석 · 규 정 집

제173조 【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① 이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74조(중앙운영위원), 제77조(의장), 제79조(임시회의), 제81조(개의·의결요건), 제82조(표결방법)를 준용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은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산하기구와 특별기구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74조 【규정집】 ① 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② 제1항의 규정집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편찬·배포를 담당한다.

③ 산하기구와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비행위】 ① 개정 내용의 홍보, 자문, 세칙·규칙 작성 등을 통해 개정 회칙의 원활한 시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2012년 2학기 중강일까지 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규칙이 이 회칙에 위배되는 산하기구·특별기구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 회칙의 시행 전까지 자치규칙을 개정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이 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대표와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 중 특별기구의 기구장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따라 그 특별기구의 기구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부터 적용한다.

③ 이 회칙 시행 당시에 이미 행해진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단체 가입·탈퇴, 대외적 협의,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은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④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특별기구는 이 회칙에 따라 인준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사무처리세칙·기록물관리세칙】 사무처리세칙과 기록물관리세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회의 임의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회가 생산한 양식을 보관할 수 있다.

제 5 조 【산하기구의 회칙준칙】 이 회의 산하기구는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각 산하기구의 회칙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의결기관의 의결로 「총학생회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6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회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 이 회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같음하여 이 회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선거시행세칙

[총학생회 세칙 제1호]

1958. 11. 5. 제 정	1960. 10. 28. 전부개정
1962. 11. 10. 일부개정	1980. 3. 28. 전부개정
1985. 3. 11. 전부개정	1985. 10. 10. 전부개정
1991. 9. 14. 전부개정	1995. 3. 27. 일부개정
1999. 3. 25. 일부개정	2001. 4. 2. 일부개정
2003. 4. 10. 일부개정	2004. 10. 25. 일부개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1~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7
제3장 기 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22
제2절 선거운동본부	23~29
제4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공고	31~32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33~40
제3절 선거운동	41~54
제4절 이의제기	55~56
제5절 징 계	57~62
제6절 투 표	63~82
제7절 투표 성립	83
제8절 개 표	84~96
제9절 당 선	97~98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99~100
제5장 선거 평가	101~104
제6장 선거시행규칙	105~106
부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총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 3 조 【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학생회칙」 제175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 4 조 【대표자 및 각 기구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이 회의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 【선거권】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사지원부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과 준회원 중에서 선거 공고일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이 선거일 현재 5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조
2. 이 회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 (후보 간 중복 추천은 가능하며,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한다)
3.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제3장 기 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기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 9 조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총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공동선거자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9.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
3. 각 동아리연합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던 자로 한다. 단, 소속 기구의 학사 일정 등 특수한 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 3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에서 해당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파견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 3 항에도 재선거·보궐선거는 현재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각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제 3 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중앙운영위원 중 한 명으로 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에서 치리되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 【위원의 해임사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이 회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4조 【위원의 사임·추가임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된 때 제10조제 2 항, 제10조제 3 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재적 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6조 【개의·의결요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9조 【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사임하면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서는 제13조(위원의 해임사유)를 준용하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제13조(위원의 해임사유)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 이후에도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집행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집행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집행국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은 사임한 이후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집행요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3. 각 선거운동본부원

②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각 동아리연합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3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4조 【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정회원·준회원이어야 한다.

제25조 【모집공고】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 1 항의 공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6조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4조(후보 등록 신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

③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28조 【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집행요원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9조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총학생회 생활방 등 부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3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1조 【선거 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9일 이내, 투표일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4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4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후보 등록에 필요한 공동선거자금 금액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3조 【추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4조 【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2.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추천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포스터용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7. 출마소견문 (A4 사이즈 1매로 하며 파일로 제출한다)
8.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 (파일로 제출한다)
9. 공동선거자금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35조 【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4조제 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 7 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 7 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4조제 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6조 【후보 등록】 제35조제 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7조 【규칙 확정 회의】 ① 제35조제 1항의 회의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30조(사무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 제반 사항

③ 제 2 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06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 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3.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6.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39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 2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40조 【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
2. 추천인수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등록학기 및 이력
4.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학번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6. 포스터용 사진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2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선거운동기간으로 할 수 없는 날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 【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경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3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추대모임
5. 제25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③ 제2항제4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정한다. 대자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및 지역선거관리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
4.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5.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6. 현재 단과대학·독립학부 부학생회장, 학부·과·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 기구장의 직에 있는 자
7.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8. 이 회의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선거관리위원 및 집행국원이 사임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회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5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6조 【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본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7조 【합동유세】 ①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2회 이하로 시행한다.

②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③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자격을 박탈한다.

④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⑧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8조 【합동공청회】 ① 합동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동공청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합동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50조 및 제51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선전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 【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6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부착 장소 및 제 2 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1조 【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에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구성은 인쇄 매체 1매로 한다.

③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④ 유인물은 회당 10,000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유인물에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주고,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24시간 동안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단, 이 때는 대자보의 수량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공동정책자료집】 ①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3000부 이내로 결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공동정책자료집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한다.

⑥ 공동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3조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아이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아이디를 공고한다.

⑤ 제 2 항을 위반하거나, 제 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그 밖에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4조 【선거운동본부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5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⑥ 정회원·준회원은 200명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6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 계

제57조 【징계】 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9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

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25조제 3 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2. 제26조제 3 항, 제40조제 3 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27조제 4 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4. 제49조제 3 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5. 제54조제 3 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6. 제55조제 5 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7.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 (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은 소멸한다)
3. 제30조제 5 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4. 제35조제 4 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44조제 5 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6조제 5 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7. 제47조제 7 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48조제 2 항의 합동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9. 제49조제 4 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0. 제50조제 4 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1. 제51조제 5 항의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때
12. 제52조제 2 항의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3. 제53조제 4 항의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4. 제54조제 4 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15. 제93조제 2 항의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25조제 4 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광고문을 게시할 때
 4. 제33조제 4 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5. 제42조제 3 항의 대자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6. 제43조제 4 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7. 제49조제 5 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할 때
 8.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9.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10.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1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3.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4.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5.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때
-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62조 【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 표

제63조 【투표방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 【투표관리】 ①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특정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 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지역선거관리위원장에 준한다.

③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5조 【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시행한다.

② 투표 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 【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기권란을 두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⑤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68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구로 송부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9조 【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0조 【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2조 【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3조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 ⑥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5조 【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제53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76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 【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8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9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80조 【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81조 【투표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82조 【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3조 【투표 성립 요건】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3일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절 개 표

제84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5조 【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6조 【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7조 【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8조 【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9조 【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인 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계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 2 호부터 제 5 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3조제 2 항에 따른 방법으로 득표를 시행할 때 그 득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90조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제91조 【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③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때 선거는 무효가 된다.

제9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3조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

회를 준다.

제94조 【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5조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기록물관리세칙」에 따라 보관한다.

제9절 당 선

제97조 【당선의 기준】 ①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조를 당선 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4.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총 투표자 수 대비 50%가 넘을 때

제98조 【당선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5.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및 득표율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99조 【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0조 【재선거】 ①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아닐 때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평가

제101조 【선거평가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확정 공고 3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102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103조 【업무】 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 가능 여부

제104조 【결과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의 논의 결과 및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05조 【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6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3. 제37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부 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운용세칙

[총학생회 세칙 제2호]

2004. 4. 25. 제 정 2006. 9. 25. 일부개정
2012. 10. 28. 전부개정

제 1 장 총 칙	1~9
제 2 장 회 계	
제 1 절 총수입·총지출	10~11
제 2 절 예산·결산	12~13
제 3 장 기구 별 재정	
제 1 절 의결기구 재정	14
제 2 절 집행기구 재정	15~24
제 3 절 산하기구 재정	25~28
제 4 절 특별기구 재정	29~30
제 4 장 기타 재정	
제 1 절 선거공영기금	31
제 2 절 자치예산	32~33
제 3 절 교지대	34~36
제 5 장 총학생회비 조정	37~41
제 6 장 재정운용규칙	42~43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① 이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이 회의 재정 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 3 조 【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학생회칙」 제173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 4 조 【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 5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 6 조 【예산·결산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회의 산하기구·특별기구와 학생 사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구·단체는 이 세칙과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안·결산을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논의에 참가하지 않는 기구에는 해당 기구에 대한 예산 지급을 보류한다.

④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⑤ 예산안·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 7 조 【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 제158조에 따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집행·결산한다.

제 9 조 【재정운용회의】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총학생회칙」 제 107조제 2 항(계열회의)에 따라 집행기구와 각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재정 담당자가 참석하는 재정운용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정운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 작성
2.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제출할 예산안·결산을 작성하기 전에 재정운용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여서 논의하고, 해당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등록자 수를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재정 담당자는 재정운용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재정운용회의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계

제 1 절 총수입·총지출

제10조 【총수입】 ①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학생회비 수입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③ 사업별 후원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하며,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총지출】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 2 절 예산·결산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항목 별로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결산의 작성】 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각 항목 별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각 기구의 결산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장 기구 별 재정

제 1 절 의결기구 재정

- 제14조 【의결기구 재정】**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 작성 시 작성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에 포함하여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 2 절 집행기구 재정

- 제15조 【집행기구 재정】**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제16조 【고정자산】**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155조제 6 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것을 고정자산으로 한다.

1. 가액이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자산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
3.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가 고정자산으로 정한 자산

- ③ 제 1 항의 목록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각 고정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명·규격(모델명)·수량
 2. 가액
 3. 구입년월일
 4. 사용처

제17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40%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2. 정기사업비
3. 비정기사업비
4. 국서·위원회별 재정
5. 그 밖에 재정
6. 이월금

제18조 【운영비】 ①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정기사업비】 정기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 4·18 대장정, 석탑대동제, 농민학생연대활동, 고연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0조 【비정기사업비】 비정기사업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1조 【국서·위원회별 비용】 국서·위원회별 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서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22조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비용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 2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5% 이상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24조 【선거공영기금】 2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10% 이상을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기금으로 배정한다.

제 3 절 산하기구 재정

제25조 【산하기구 재정】 ① 산하기구 재정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각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집행위원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6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40%를 산하기구에 배정한다.

제27조 【단과대학·독립학부 재정】 ① 산하기구에 배정된 금액의 80%를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배정된 금액 중 금 500,000원을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

여 지급한다. 이 때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정운영회의를 통해 제 2 항의 인원 비율에 따른 배분 이외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생 단과대학·독립학부는 재정운영회의를 통해 지급액을 논의한다.

제28조 【동아리연합회 재정】 ① 산하기구 재정의 20%를 동아리연합회에 배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에 배정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동아리연합회에 배분한다.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동아리연합회: 75%
2. 애기능동아리연합회: 25%

제 4 절 특별기구 재정

제29조 【특별기구 재정】 ① 특별기구 재정은 각 특별기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특별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재정 담당자가 있는 기구는 재정 담당자에게, 없으면 해당 특별기구의 기구장에게 있다.

제30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10%를 특별기구에 배정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특별기구에 배정된 금액 중 금 500,000원을 각 특별기구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각 특별기구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필요 예산의 정도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단, 한 특별기구가 전체 특별기구 재정의 20%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제 4 장 기타 재정

제 1 절 선거공영기금

제31조 【선거공영기금】 ① 선거공영기금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시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된다.

② 선거공영기금의 수입은 제24조에 따른 선거공영기금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각 선거운동본부가 납부한 공동선거기금으로 한다.

③ 선거공영기금 운용의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④ 선거공영기금의 결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후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의되면 「총학생회칙」 제161조(사전 승인에 관한 특례)에 준하여 결산을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 2 절 자치예산

제32조 【자치예산】 ① 자치예산은 이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가 아닌 자치단체의 활동에 총학생회비 수입을 지원함으로써 학내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한다.

② 자치예산 운용의 책임은 총학생회에 있다.

제33조 【예산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10%를 자치예산으로 배정한다.

② 자치예산 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교지대

제34조 【교지대】 ① 교지대는 각 교지편집위원회가 교지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관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② 교지대 운용의 책임은 각 교지편집위원회에 있다.

제35조 【예산배정】 교지대는 학생회비와 별도로 관리되며 “고대문화”와 “석순”의 교지편집위원회가 협의하여 배정한다.

제36조 【자치언론기금】 ① 건전한 학내 자치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지대의 15%를 자치언론기금으로 배정한다.

② 자치언론기금의 운용은 중앙운영위원 한 명, 중앙집행위원 한 명, 각 교지편집위원회 한 명으로 구성되는 자치언론기금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자치언론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총학생회비 조정

제37조 【인상률】 총학생회비는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조정 절차】 총학생회비 조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동의로 의결한다.

제39조 【재심의】 정회원·준회원 600명의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비의 조정의 재심의를 요구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인상안을 재심의를 한다.

제40조 【교지대 조정】 교지대의 조정은 총학생회비 조정과 함께 논의하고, 총학생회비 조정 절차에 준해 의결한다.

제41조 【금액 조정의 발효】 제39조(재심의)에 따라 총학생회비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연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6 장 재정운용규칙

제42조 【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의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의진행세칙

[총학생회 세칙 제3호]

2012. 10. 28. 제 정

제1장 총 칙	1~6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7~15
제3장 회의의 구성	16~24
제4장 안 건	25~31
제5장 발 언	32~38
제6장 동 의	39~47
제7장 표 결	48~51
제8장 회의록	52
제9장 소규모회의	53
제10장 회의진행규칙	54~55
부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이 회 회의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 3 조 【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총학생회칙」·회의진행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회의진행의 민주성·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총학생회칙」 제175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 4 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회의체”라 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결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 5 조 【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회의, 집행위원장회의, 계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 7 조 【공개 원칙】 ① 이 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 회원은 이 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 회의의 논의 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 8 조 【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총학생회칙」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 9 조 【일의제의 원칙】 이 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론자유 원칙】 ① 이 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하면 의장은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②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③ 발언권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평등의 원칙】 이 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다수결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① 한 번 처리된 안건은 회기 내에 같은 회의 또는 하위 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 또는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 2 항,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 4 항에 따른다.

② 한 번 처리된 안건을 같은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③ 제 2 항에도 특별한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회기 내에 같은 회의 또는 하위 회의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한 번 처리된 안건을 상위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회의의 안건 발의 요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⑤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총학생회칙」 제16조에 따라 분류한다.

⑥ 이 회 집행기구 및 그 밖에 회의는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를 준용한다.

제15조 【회기 불계속의 원칙】 ① 이 회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된다. 단,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위 회의로 위임되거나,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다.

② 안건 위임과 기한부 연기동의는 해당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③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회의는 한 분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의 안건 위임 또는 기한부 연기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6조 【구성】 이 회 각 회의는 「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17조 【의결권】 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이 회와 특정 회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그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이 회 각 의결기구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인준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①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의장은 이 회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서기장】 ① 이 회 의결기구는 구성원 중 한 명을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서기장으로 임명한다.

② 서기장은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한다.

제20조 【소집】 ①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장은 교내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 있다.

제21조 【의사정족수】 이 회 회의는 회의장에 재석 인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 【회순】 ① 개의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의선언
3. 의례
4. 의장인사
5. 전 회의록 낭독
6. 보고사항
7. 안건심의 순서 확정
8. 안건심의
9. 폐회선언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 1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의 산회·유회·정회】 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회의의 산회, 유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면 의장은 회의 시각을 개의 예정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재소집한다.

⑤ 제 3 항에 따라 회의가 정회되면 의장은 회의를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유회·휴회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조정위원회】 ① 회의 개의 전·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사조정위원회는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제4장 안 건

제25조 【안건】 ①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결의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제26조 【안건의 제출】 ① 안건의 제출은 「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안건의 제출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철회】 ① 안건의 제출자는 안건이 회의체에 상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안건이 회의체에 상정된 이후에는 회의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안건 심의】 ①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표결은 병합이나 분할이 불가능하다.

제29조 【토론·동의】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0조 【안건의 처리과정】 ①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② 안건 심의 중 동의를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를 처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① 찬반표결 안건은 「총학생회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택일표결 안건은 제 1 항과 같은 출석에 일괄표결 또는 순차표결에 부쳐 과반수를 얻은 안으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상위 2개 안을 결선투표에 부쳐 상대적으로 다수인 안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장 발 언

제32조 【발언권】 ①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② 발언권을 얻은 자는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③ 구성원은 이 세칙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발언 횟수와 시간】 ① 회원은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신상발언】 ① 신상발언이라 함은 자신의 신상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② 의장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35조 【의사진행발언】 ①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이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② 의사진행발언은 규칙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 요구 등으로 한다.

제36조 【의사진행발언의 발언허가】 ① 회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규칙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7조 【의사진행발언의 처리】 ①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발언 이외의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항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항의를 회의체에 상정하여 회의체의 결정을 구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결정은 번복된다.

③ 규칙발언은 의장이 「총학생회칙」·세칙·규칙 등을 참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치어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8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장 동 의

제39조 【동의】 동의는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의 심의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동의의 성립·상정】 ① 모든 동의는 구성원 한 명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②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1조 【동의의 종류·서열】 ① 동의에는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동의 등이 있다.

② 동의들 사이의 서열은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순서와 같으며, 상위 동의가 계류중인 때에 하위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

제42조 【준용】 동의에는 제14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28조(안건 심의), 제29조(토론·동의), 제30조(안건의 처리과정), 제31조(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43조 【수정동의】 ① 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②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으며, 개별방식에는 삽입, 삭제, 대체가 있고 포괄방식에는 대안이 있다.

③ 총회는 안건 또는 동의 중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복수의 수정동의를 일괄 제출받아 택일표결 또는 순차표결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안건 또는 동의 중 어느 사항이 공란인 채 제출되는 때는 원칙으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 공란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수정동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수정동이는 더 수정할 수 없다.

제44조 【회부동의】 ① 회부동이는 안건을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② 안건 일부의 처리를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회가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위원 중 한 명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이 회의는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안건을 돌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회의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회의는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⑥ 회부동이가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연기동의】 ① 연기동이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② 연기동이에 일정시간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란 명시가 없으면 다음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 연기하자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토론종결동의】 ① 토론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②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2인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③ 동의에 이의가 없을 때 구성원은 토론의 즉시종결과 아울러 원안통과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7조 【그 밖의 동의】** ① 이 세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의들도 이 회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표 결

- 제48조 【표결】** ① 안건과 동의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동이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9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⑤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 제50조 【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51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8장 회의록

- 제52조 【회의록】** ① 이 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의·정회·유회 또는 산회의 일시
 3. 개의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 5 조(대표자의 책임)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6. 의사
 7. 표결 결과 (구성원이 제 5 조에 해당할 때, 기명투표는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8. 하위 회의로 안건 위임될 때 위임되는 안건의 제목
 9.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회의록은 회원 중 한 명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 ④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날인하여 공개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제1항의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소규모회의

- 제53조 【소규모회의】** ① 소규모회의라 함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 이하인 회의체를 말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회의, 집행위원장회의, 계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이 넘더라도 소규모회의로 본다.
 - ③ 소규모회의는 모든 동의의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소규모회의에는 제33조제1항(발언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출석 인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0장 회의진행규칙

제54조 【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 제55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다.
- ②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